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9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남근 · 임호선 · 김 윤
박정현 · 김현정 · 박홍배
민병덕 · 진성준 · 송재봉
강준현 · 김승원 · 채현일
이용우 · 윤준병 · 이건태
이강일 의원(16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범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

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

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다.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4조”를 “제19조 또는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4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1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4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15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2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3호) 중 “제15조, 제23조, 제25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7.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3조, 제17조, 제18조제7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24조제1항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8조(과징금)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범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9조 또는 제24조-----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

----- 100분의 30 -----

----- 200억원 -----

-----.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

----- 100분의 10을 -----

----- 50억원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

②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

③ -----

----- 100분의 15 -----

100억원-----

--.

제124조(벌칙) ① -----

-----.

<삭 제>

<삭 제>

1. 제15조 -----
--

<삭 제>

<삭 제>

<u>환한 자</u>	
6. <u>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u>	<삭 제>
7. <u>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u>	<삭 제>
8. <u>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u>	<삭 제>
9. ~ 13. (생략)	2. ~ 5. (현행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벌칙) ----- ----- -----.
1. <u>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삭 제>
2. <u>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u>	<삭 제>
3. <u>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u>	<삭 제>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
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
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4. (생략)

1.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0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
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고한 자

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
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
출한 자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p><u><신 설></u></p> <p>5. ~ 7.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까지와 같음)</p> <p>7.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u>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p> <p>8.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